

소득세분야 7

No. 7



글/ 임현석 세무사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

Q 사업자가 년도중 폐업한 경우 폐업과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납부후 타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 방법

A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 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시 소득금액 계산

Q 4인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판매 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

A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지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Q 2인의 공동사업자가 각자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경우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공동사업자 2인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경우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A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치입한 치입금액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Q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무기장가산세에 대한 계산방법?

A 부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 수입 회계처리

Q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봉사료가 사업주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스포츠맛사지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봉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Q 의류 및 침구제조업체로 당사와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A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는 백화점 매장판매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Q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A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예규정과 같은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